

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준수 집합제한 행정명령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기도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발령하고, 현행 경기도 공고 제2020-1325호 「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연장」은 본 공고로 대체함

2020년 7월 7일

경기도지사

1. 처분개요

가. 처분당사자 : 다음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·종사자 및 이용자

계	유흥주점	감성주점	콜라텍	단란주점	코인노래연습장
8,374	5,536	133	63	1,964	678

- 유흥주점 : 클럽형태, 룸싸롱, 바(bar) 등 유흥형태의 운영 업소
- 콜라텍 : 자유업종으로 주로 노년층 밀집공간으로 신고 민원 다수
※ 단, 관할 소방서에서 "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고 사업자등록증의 종목란에 '콜라텍'이 명시된 업소에 한함
- 단란주점 : 주류와 노래 가능하나, 종업원이 손님에게 주류를 따르는 행위 등 불가
- 코인노래연습장 : 이용료를 직접 결제하면 연주되는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춘 노래연습장

나. 처분내용

- 상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반드시 아래 “사.방역수칙”을 준수할 것
- 경기도 공고 제2020-1325호 「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연장」은 본 공고로 대체함

다. 처분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

라. 처분사유 :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코로나19 전파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출입명부의 도입 등 방역여건 개선을 반영한 적절하고 긴급한 조치 필요

마. 처분기간 : 2020. 7. 7 ~ 별도 해제시

바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7. 7. 부터

사. [방역수칙]

시설	사업주 · 종사자 수칙
코인노래 연습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방역관리자 지정■ 출입자 명부 관리 (4주 보관 후 폐기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전자출입명부 설치- 수기명부 비치 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■ 출입자,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■ 사업주, 종사자 마스크 착용■ 영업 전/후 시설 전체 소독(일 2회 이상) (대장작성)■ 일 2회 이상 시설 전체 환기■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,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(대장작성)■ 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 (착용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도 불이익 고지)■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■ 마이크 커버를 씌우고 개인별로 사용토록 충분히 비치■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, 마이크, 리모콘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■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소관 보건소 보고 및 지시에 따라 방역 조치■ 휴게실, 대기실, 흡연실 등에 모여 있지 않기

2. 처분서의 교부요청 : 처분 당사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3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4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(300만원 이하의 벌금) 될 수 있고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5. 처분 담당자

이름	소속	직급	비고
윤덕희	경기도청 감염병관리과	지방기술서기관	-
최문갑	경기도청 감염병관리과	지방보건사무관	-

6. 문의처

분야	이름	소속	직급	연락처
유흥주점 등	이정규	경기도청 식품안전과	지방보건사무관	031-8008-3681
유흥주점 등	이진아	경기도청 식품안전과	지방보건주사	031-8008-3689
코인노래연습장	서봉자	경기도청 콘텐츠정책과	지방행정사무관	031-8008-4626
코인노래연습장	정송이	경기도청 콘텐츠정책과	지방행정주사보	031-8008-4658

끝.